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영진·허 영·임광현

임호선 · 강유정 · 김영환

서삼석 • 조승래 • 박지원

소병훈 • 윤후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,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 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, 농어가목돈마런저축은 농어 민·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,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 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 에 필수적인 바,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.

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(안 제72조제1항, 제87조의2, 제10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	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세 과세특례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	
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	
인세는 <u>2025년 12월 31일</u> 이전	<u>2028년 12월 31일</u>
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	
인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	
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	
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	
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	
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	
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	
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	
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	
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	
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	
진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	
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	
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	
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	
한 금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	
이 20억원(2016년 12월 31일	

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 1. ~ 8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저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대한 비과세)
2028년 12월 31일

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 략)

·	
1. ~ 3. (현행과 같음)	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	적
용) ①	
2020	1 4
<u>2028</u> <u>-</u>	<u>1</u> 1
<u> 2월 31일</u>	
· 1. ~ 6. (현행과 같음)	
② (현행과 같음)	